

의안 번호	1527	【울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19. 2. 25.(월)
- 나. 발의자 : 노세영 의원 외 6명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3. 14.(목)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9. 3. 26.(화)

2. 제안설명 요지(노세영 의원)

가.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중구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등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 기부자 관리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및 제13조)
-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안 제14조)

다. 근거법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계화)

본 제정 조례안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발적 기부자의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 거 법 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 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접수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단순히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 단체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
- ③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행정안전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제3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위원에는 민간인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 운영)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두는 기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 3. 29.>

② 위원장은 시 · 도의 경우 시 · 도지사,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 도의 경우 행정부시장 · 행정부지사, 시 · 군 · 자치구의 경우 부시장 · 부군수 ·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 · 도 또는 시 · 군 · 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시 · 도 및 시 · 군 · 자치구 기부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